

EU 우유 초과생산 회원국에 과징금 부과

유럽연합(EU)은 회원국이 신고한 연간 생산량에 기초하여 잠정적으로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, 9개 회원국이 2004/05년 기간에 낙농업 부문에 대한 할당량(milk delivery quota)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. 이와 별도로 한 회원국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할당량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.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해당 10개 회원국에 소위 ‘Super Levy’라는 과징금을 물게 할 예정이고, 총 과징금 규모는 3억 6,400만€에 이를 전망이다. 2003/04년 총 과징금 규모는 3억 8,500만€였다.

2004/05년 EU25 전체 낙농가에 할당된 총 할당량은 1억 2,600만 톤이고, 이는 64만 1,000개의 개별 할당량으로 세분화된다. 각 회원국의 신고에 따르면, 9개 회원국(벨기에, 덴마크, 독일, 아일랜드, 이탈리아, 룩셈부르크, 네덜란드, 스페인, 오스트리아)이 할당량을 초과했고, 총 초과물량은 106만 9,000 톤에 이른다.

6개 회원국(프랑스, 그리스, 영국, 포르투갈, 핀란드, 스웨덴)은 할당량을 완전히 사용하지는 않았다. 10개 신규 회원국 역시 할당량을 초과하지 않았다. 신규 회원국이 할당량을 초과하지 않은 이유 중 일부는 2004년 5월 1일 이후의 생산량만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.

EU는 최대허용기준량(maximum reference quantities)을 이용해서 우유 마케팅을 제한하여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유지해 왔다. 각 회원국은 두 종류의 ‘허용기준량’을 받는데, 하나는 낙농가에 대한 delivery quantities이고, 다

른 하나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양이다. 각 회원국은 과거 생산량에 기초하여 이 할당량을 생산자들에게 분배한다(개별 할당량). 해당 연도(특정 연도 4월 1일~차년 3월 31일) 동안 국가 할당량을 초과하여 생산할 경우에는 초과한 국가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다. 과징율은 0.3327 €/kg이다. 매년 9월 1일 이전에 각 회원국은 전년도 우유 할당 계획안 적용 내역을 EU 집행위원회에 신고한다.

출처: 유럽연합 보도자료 데이터베이스
(유찬희 ruledes78@naver.com 019-251-8793 지역아카데미)